
서 평

www.kci.go.kr

1880년대 국경회담에서 발견한 간도문제의 ‘불편한’ 진실

[서평] 김형종(2018),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88쪽.

배 성 준*

1. 왜 1880년대 국경회담인가?

해방 이후 간간이 간도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간도문제가 대중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터져나오던 무렵이었다. 2004년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논의가 쏟아져 나왔는데, ‘동북공정의 목적이 간도문제에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간도협약 무효’를 통한 간도 영유권 회복이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써 제기되었다. 당시 결성된 ‘간도되찾기운동본부’는 국민운동 차원에서 간도문제를 이슈화하였으며, 간도협약이 체결된 9월 4일을 ‘간도의 날’로 선포하였다. 이렇게 간도문제가 부각되자 2004년 9월 국회에서 김원웅 의원 등 59명이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하였다. 간도협약 100년을 앞두고 ‘간도 영유권 100년 시효설’¹⁾이 나와서 간도문제의 시급함을 부각시켰으며, 간도협약 100년을 맞는 2009년에는 이명수 의원 등 50명이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지금도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2009년을 정점으로 간도문제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는 ‘동북공정의 목적이 간도문제에 있다’는 주장이 구체적 근거 없이 목소리만 높인 것이었고, ‘간도 영유권 100년 시효설’ 역시 학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대국화된 중국과의 현실적 외교관계를 감안하는 한편 당장 간도문제를 제기할 당사자는 북한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간도문제는 통일 이후에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암묵적 지지를 얻게 된 상황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북아시아에서 민족주의가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여타 지역의 영토문제와 마찬가지로 간도문제도 언제든지 다시 점화될 소지가 남아 있다.

‘간도협약 무효’라는 주장은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면 간도가 당연히 우리 영토로 귀속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간도가 우리 영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제법 연구자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거론되었을 뿐 아니라 외교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즉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체결된 ‘을사조약’이 무효인 만큼, 이에 근거해서 또한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점은 명백하지만,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해서 곧 간도가 우리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간도협약이 무효라면 간도협약 보다 약 20여 년 앞서 조선과 청이 토문강/두만강 국경을 다투었던 1880년대 국경회담이 검토

1) ‘간도영유권 100년 시효설’은 간도 영유권 회복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것으로, 국제법상 영토문제의 시효는 100년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체결 100년이 되는 2009년까지 간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간도는 영원히 중국 영토가 된다는 주장이다.

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간도문제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면 1712년에 세워진 백두산정계비가 논란의 출발이지만, 정계비 설립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조선과 청 사이에 실질적으로 영토나 국경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 개척된 최초의 국경회담이자 간도협약 이전의 국경회담이라는 점에서 1880년대 국경회담은 간도 영유권 문제에서 관건적인 의미를 지닌다.

김형종의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1)는 “1880년대의 제1·2차 공동감계·국경회담에 대한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을 상세하고도 가능한 정확하게 재구축”(17쪽)하는 최초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한중 국경사 연구나 간도문제 연구에서 가지는 의미는 여느 연구성과 못지않게 크다. 저자는 청말의 광서 신정과 신해혁명기를 전공으로 하지만, 동북공정이 국민적 이슈로 부각되던 무렵 국사편찬위원회의 국경과 영토에 관한 프로젝트에서 중국 측 자료를 담당하면서 간도문제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동북아역사재단의 영토문제 관련 프로젝트에서 여러 해 동안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번역을 담당하면서 조선과 청의 변경정책 및 국경문제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사료를 폭넓게 섭렵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저자는 1880년대 국경회담에 관한 중국과 한국의 사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선별, 편집하고 이를 번역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인 『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 관련 자료 선역』(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11)을 출간하였고, 이어 자료집에 대한 해설서이자 연구서라고 할 수 있는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를 간행하였다.

2. 국경회담의 ‘불편한’ 진실을 찾아서

1880년대 국경회담에 대한 연구는 간도문제 연구의 일부로서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관련 자료도 상당 부분이 정리, 공간되어 있다. 그렇지만 1880년대 국경회담에 대한 널리 알려진 주장, 즉 이중하가 중국 측의 강압 때문에 토문강 경계를 포기하였다는 견해가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²⁾ 또한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중국 측의 대표적인 주장, 즉 백두산정계비가 원래 소백산 분수령에 세워졌는데 조선 사람들이 몰래 백두산 기슭으로 옮겼다는 ‘정계비 이설론’(移設論) 역시 국경회담 당시에 제기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저자는 기존의 간도문제 연구가 “기왕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분석을 모색하기보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는 내셔널리즘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이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전에 설정된 결론에 맞추어 거기에 유리한 자료나 사실만 의도적으로 선택·해석·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14쪽)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내셔널리즘의 영향 아래 국경·영토문제 연구가 가지는 선입견이나 편견, 오해나 오독에서 벗어나 국경회담의 ‘진실’을 찾아 나선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에서 편찬한 자료 뿐 아니라 중국에서 편찬한 자료를 섭렵하면서 국경회담에 관련된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재구축해 나가는 과정이었으며, “기왕의 연구 성과 위에서 이루어졌던 서술과 해석을 하나하나 재검토해 가면서 그 가운데에 일부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해석하거나 서술하는 시행착오의 연속”(18쪽)이기도 했다. 저자는 국경회담의 배경을 이루는 1860년대부터 국경회담의 여파가 미치는

2)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樂浪書房, 1938 (시노다 지사쿠, 신영길 역, 『간도는 조선땅이다 — 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지선당, 2005); 최장근, 『간도영토의 운명』, 백산자료원, 2005, 83쪽.

1890년대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며 촘촘한 자료의 그물을 짜면서 국경회담의 진실을 건져 올린다.

저자는 제1장의 「들어가는 말」에서 ‘정계비의 수수께끼’ — 오라총관 목극등이 정계비를 세우고 동쪽으로는 ‘토문강’(당시 목극등에게는 두만강을 의미)으로 연결된다고 기록하였지만 실제로 그가 지정한 물줄기가 송화강으로 이어진다는 문제 — 가 혼란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 제2장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배경」에서는 19세기 후반 조선 북방 주민의 월경개간 문제를 둘러싸고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1880년 ‘경진개혁’ 직후 대규모 월간민의 존재가 혼춘당국에 알려지면서 길림 당국은 월간민을 조선으로 쇠환하기 보다는 중국으로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정부는 월간민의 귀환을 요청하였다가 1883년 4월 함경북도 종성부에서 ‘토문강은 분계강이고 조선 백성이 월간한 분계강 남쪽은 중국 땅이 아니라 조선에 속한다’는 주장을 둔화현에 제기하면서 월간민 쇠환 문제는 국경문제로 비화되었다. 길림 당국이 공동감계를 수용하면서 1884년 11월 지방 당국 차원에서 국경회담이 이루어졌으며, 회담이 지연되고 월간민 처리가 논란이 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공동감계로 나아갔다.

제3장 「제1차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에서는 1885년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된 제1차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과정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감계가 확정되자 양국은 감계위원을 임명하였고, 1885년 9월 회령에서 양측 감계위원이 회동하면서 공동감계가 시작되었다. 조선 측은 정계비 검증을 내세운 반면 중국 측은 두만강 조사를 우선 시하여 결국 두만강과 정계비에 대한 공동조사에 나섰다. 공동조사 결과 정계비 옆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송화강으로 연결되는 점, 홍토산과 원지(圓池) 부근에서 두만강이 발원하고 소백산 동남쪽의 물줄기가 두만강으로 흘러든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후 진행된 국경회담에서 중국 측은 정계비를 불신하고 두만강의 정원(正源)을 정하자고 주장하였고 조선

측은 정계비와 흙·돌무더기에 기반하여 국경문제를 처리할 것을 주장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국경회담 이후 중국 측은 소백산이 원래의 분수령이라는 ‘정계비 이설론’을 제기하고 홍단수가 두만강의 본류라고 정리하였으며, 조선 측은 정계비와 흙무더기를 근거로 하여 ‘토문강-토문자(土門子)-분계강’을 경계로 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제4장 「제2차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에서는 1887년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진행된 제2차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과정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1886년 초에 재감계 방침을 결정하였지만 원세개가 중국 땅을 빌려 월간민을 안치하겠다는 ‘차지안치론(借地安置論)’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김윤식이 토문과 두만이 같은 강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홍토수 경계론으로 선화하면서 타협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동감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길림장군의 강력한 요구로 제2차 공동감계가 이루어졌다. 이미 두만강을 경계로 한다는 점에는 양측이 이견이 없었기에 양측은 홍단수 답사에 이어 홍토수, 정계비를 조사하였고, 중국 측은 홍단수 경계를 주장한데 대하여 조선 측은 홍토수 경계를 주장하였다. 공동감계에 이은 국경회담에서도 홍단수와 홍토수를 둘러싼 양측의 대치는 해소되지 않았다. 중국 측에서 소백산에서 발원하는 ‘석을수’를 경계로 삼자고 다시 제안하였지만 조선 측이 홍토수를 고수함에 따라 국경회담은 결렬되었다. 이후 조선 측은 월간민에 대한 중국 측의 시체를 요청하는 소극적인 대책에 머물렀으며, 중국 측은 ‘정계비 이설론’을 전제로 소백산이 분수령이고 소백산에서 발원하는 석을수가 두만강의 본류라는 결론을 내리고 황제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였다.

제5장 「제3차 공동감계의 무산과 중국의 동화정책 추진」에서는 제3차 공동감계가 무산되고 월간민에 대한 길림당국의 적극적인 동화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길림장군의 요청으로 재감계가 결정되었지만, 조선 측은 재감계는 무의미하다고 거부하였고, 중국 측은 홍토수가 발원하는 원지가 청조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홍토수 경계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논리를 제기하였다. 조선 측이 재감계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중국 측은 조선 측을 압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국경회담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월간민을 장악하기 위한 양측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중국 측은 1888년 7월 길림장군이 새로 부임하면서 월간민이 러시아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이민실변의 실질적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적극적인 편입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상에서 정리한 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의 배경, 과정, 대응에 이르는 일련의 흐름은 단순한 자료의 나열이 아니라 저자가 한국과 중국의 국경회담 관련 자료 전반을 정리, 분석하고 시계열적으로 재구성한 성과이다. 이를 통하여 저자는 기존의 간도문제 연구가 가진 선입관과 편견, 자료에 대한 오독에서 벗어나 국경회담의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한·중 양국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해석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객관적’ 진실일 뿐 아니라 대중에게 익숙하고 미디어에서 선호하는 내셔널리즘적 사고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재구성한 자료를 통하여 보여주는 국경회담의 역사적 사실은 저서에 산재해 있지만, 먼저 간도 명칭의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은 간도 명칭이 근대 이전에 기원한다고 주장한다. 즉 간도 명칭이 고대에 사용되던 ‘곰터’라는 말에서 왔거나, 조선 태조의 선조가 다스리던 두만강 북쪽의 ‘알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간도 명칭의 유래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면서 간도 명칭이 1880년 회령부사 홍남주에 의하여 추진된 ‘경진개척’에서 유래한다고 파악한다. 저자는 경진개척에 대한 『간도개척사』의 자료적 한계를 길림 당국의 문건으로 보완하면서, 경진개척 당시 “(두만강)물을 끌어들이 개간케 하고 간도라고 명명하였다가 나중에 만일 시비가 날 때에는 간도라고 하여 과실을 회피하려 함이니 …(중략)… 관부로서는 양전원을 파견하여 전정(田政)을 맡겨 토지대장과 야초(野草, 地稅

名寄帳)를 작성하니 바로 「간도토지대장」이다. 이것을 「간도야초」라 제명하니 이것이 바로 간도라는 명칭의 원인”(81쪽)이라는 『간도개척사』의 서술이 간도 명칭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득력있는 주장”(92쪽)이라고 제기한다.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들이 간도의 한글 표기인 ‘사이섬’이나 개척한 땅이라는 의미의 ‘간토(墾土)’에서 간도 명칭의 기원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경진개척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덧붙여진 ‘경진개척 출현설’은 유력하고도 설득력있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저자 자신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간도개척사』의 초기 기록은 자료로서 신뢰성이 떨어지며, 간도 명칭이 나오게 되는 정황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간도개척사』의 서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중하의 「별단초」에 나오는 설명,³⁾ 길림장군이 상주한 문서(1882.1.25)에 나오는 설명,⁴⁾ 연변에서 간행한 『중국조선족력사상식』에 나오는 간도 관련 증언⁵⁾을 보완하여 경진개척 이전에 간도 명칭이 출현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즉 간도 명칭은 1877-78년 경에 종성지역 농민들이 두만강의 모래톱을 개간할 때에 그 북쪽 지류가 넓어져서 섬

3) “간도는 종성과 온성 사이에 두만강 지류가 있는 곳에서 몇 궁(弓)을 넘지 않는 [좁은] 땅을 말합니다. 본래 농지가 귀한데다 정축(丁丑, 1877)년부터 분거하던 사람들이 누차 호소하는 글을 올려 비로소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간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83쪽)

4) “지금 조선인들이 개간한 지역[두만강에 있는 모래 섬]의 북쪽에 지류가 하나 있는데, 근년에 더욱 침식되면서 그 강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조선의 가난한 백성들은 [두만강 남쪽의 땅이 수몰된 곳이 많고, 강 북쪽의 모래섬(沙灘)에 새로 늘어난 땅이 생기자 마침내 지류를 본류로 오인하고, 이것이 거둬 와전되었던 것입니다.”(108-109쪽)

5) “지금 선구촌에 속한 두만강 강바닥에 길이가 약 2,500미터, 너비가 약 500미터 되는 모래톱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이 모래톱을 가강(假江)이라고 불렀다. 1878년 좌우부터 조선 종성 농민들이 두만강을 건너와 이 모래톱을 일구고 부치기 시작했다. 1881년에 그들이 두만강 북쪽에다 물도량을 빼는 바람에 이 모래톱이 ‘섬’으로 되어 사람들은 이를 간토(墾土) 혹은 간도(間島) 즉 사이섬이라고 불렀다.”(연변인민출판사, 『중국조선족력사상식』, 연변인민출판사, 1998, 22-23쪽.)

처럼 생긴 모습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처음 출현하였으며, 경진개척 당시 농민들이 사용하던 간도 명칭을 공식화하였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경진개척’을 계기로 한 대규모 월경 개간 및 월간민에 대한 함경도 당국의 실질적 통제가 국경회담의 계기이자 규정력임을 밝혔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간도개척사』의 경진개척 부분에 대하여 대규모 월경 개간의 계기이고 길림 당국에서 이를 이민실변 정책에 활용하였다고 언급하는 정도이다.⁶⁾ 저자는 『간도개척사』 서술의 자료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경진개척이 대규모 월간민 출현의 계기로 인식하는 한편, 대규모 월간민에 대하여 호적 편성과 징세 등의 실질적 통제를 관철시킨 함경도 당국의 이해관계가 국경문제의 주도적 계기와 연루되어 있다고 파악하였다. 즉 “조선백성의 대규모 월간이 단순하게 일부 빈민들이 생계·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것이 아니라, 지방 당국의 비호 아래 집단적인 월경·개척을 실행한 것”(477쪽)이라는 점을 중국 측 자료를 통하여 실증함으로써 월간민에 대한 통제가 국경회담을 규정하는 실질적 쟁점임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지방 당국의 월간민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식민지 경영’(190쪽)으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지방 당국의 ‘식민지 경영’이 길림 당국의 월간민 통제와 충돌하면서 월간민의 ‘차지안치’를 둘러싼 양국 간의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파악하였다.

셋째, 국경회담에서 조선 측의 토문강 경계론이 폐기되고 홍토수 경계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규명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토문강 경계에서 홍토수 경계로의 전환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제1차 공동감계에서 정계비 옆에서 시작된 물줄기(‘토문강’)가 송화강으로 연결된다는 점과 이 물줄기가 분계강(=해란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조선 측이 토문강 경계론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단계이다.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에 직면하여 조선 측은 토문강

6) 김춘선, 「1880-1890년대 청초의 ‘이민실변’ 정책과 한인 이주민 실태 연구 — 북간도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근현대사연구』 8, 1998, 17-19쪽.

경계론을 고집할 수 없었기에 정계비와 흙·돌머더기가 ‘토문’으로 경계를 나누는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중국 측은 ‘정계비 이설론’을 내세워 국경비로서 정계비의 가치를 부정하였다. 두 번째는 제1차 국경회담 이후 이중하의 보고와 김윤식의 조회에서 홍토수 경계로 정리되는 단계이다. 이중하는 국경회담을 마치고서야 목극등의 수계 판단 착오 때문에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계비로부터 두만강의 원류인 홍토수까지 설치된 흙·돌머더기와 나무울타리의 흔적을 발견하고서 홍토수 경계론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중하의 이러한 결론에 동의하는 김윤식이 홍토수 경계론이 조선 측의 입장임을 공식화시키면서 제2차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은 홍토수 경계를 전제로 열릴 수 있었다.

저자도 언급하듯이 토문강 경계에서 홍토수 경계로의 전환이 이제야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이화자 연구원이 현지조사를 통하여 정계비 건립 직후 표지물 설치 담당자가 정계비로부터 두만강의 원류인 홍토수까지 흙·돌머더기와 나무울타리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목극등의 수계 판단 착오로 돌·흙머더기가 송화강의 지류로 연결된다는 점만을 지적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정계비 건립 직후의 표지물 공사 상황 및 이중하의 「추후별단」에 나오는 설명, 즉 정계비에서 시작된 돌·흙머더기, 나무울타리가 홍토수의 발원지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었고, 따라서 조선 측의 입장 전환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화자와 이강원의 연구를 통하여 정계비 건립 당시 정계비에서 홍토수로 설치한 표지물이 확인되고 이중하가 그 흔적을 발견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로소 홍토수 경계로 조선 측의 입장 전환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넷째, ‘정계비 이설론(移設論)’이 국경회담에서 제기되어 중국 측의 공식 입장으로 자리잡았음을 밝혔다. 저자에 따르면 정계비 이설론이 처음 제기된 것은 국경회담 이전이었다. 1884년 11월 훈춘당국에서 함경도관

찰사에게 보낸 조회에서 토문강-분계강 경계론을 주장하는 종성부사의 조회에 반박하면서 “비석은 옮길 수 있으나 강은 옮기기 어렵다”(164쪽)라고 정계비가 옮겨졌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어 1885년 10월 제1차 국경회담 과정에서 중국 측은 “이 비석은 무게가 불과 백여 근인데 어찌 그것을 옮길 사람이 없다고 하겠는가?”(221쪽)라고 하면서 정계비 조사 보다는 두만강의 가장 남쪽 지류인 서두수(西頭水)를 우선 조사하자고 주장하였고, 제1차 국경회담 직후 감계위원의 보고를 받은 길림장군이 압록강과 홍단수가 발원하는 소백산 분수령에 정계비가 세워져야 비석 기록과도 일치한다고 총리아문에 보고하면서 정계비 이설론은 중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저자는 정계비 이설론이 공식 입장이 된 것은 제1차 공동감계를 통하여 정계비가 송화강 발원지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두만강 경계를 주장하는 중국 측으로서는 “정계비 이설론을 계속 견지하는 방안을 고집하면서 정계비의 증거능력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231쪽)고, “정계에 관련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던 중국 측으로서는 백두산정계비의 위치나 그 비문의 내용이 가진 의미를 철저히 부정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다”(27쪽)라고 파악하였다. 이렇게 중국 측의 공식 입장이 된 ‘정계비 이설론’은 간도협약 무렵의 『연길변무보고』(吳祿貞, 1908)에서 오늘날의 『중국근대변계사』(呂一燃, 2007)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헌에 거론되면서 백두산정계비를 불신하는 핵심적 주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3. 동아시아의 근대적 국경획정으로 나아가기

저자는 1880년대 국경회담에 관한 중국과 한국의 사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을 편집, 번역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집에 대한 충실한 연구서 저술을 통하여 국경회담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

냄으로써 향후 간도문제 연구를 위한 든든한 주춧돌을 놓았다. 평자로서는 저자의 작업에 전폭적으로 공감하며, 이러한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을 상세하고도 가능한 정확하게 재구축해 나가는 작업”이 대한제국기 간도정책이나 러일전쟁 직후 일본의 간도정책 같은 주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일부 자료의 해석이나 국경회담의 평가와 관련하여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고, 시야를 조선과 청 양국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시야를 확대해서 조선-청 국경회담을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청-러시아 동부국경획정(1858-1861) 및 청-프랑스 중월국경획정(1885-1897)과 비교한다면 근대적 국경획정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청 국경회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네르친스크조약에서 출발하는 근대적 국경획정은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식민화 및 국경획정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에서 보편적 국경획정 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텐진조약(1858)과 베이징조약(1860) 및 한카의정서(1861) 체결에 이르는 청-러시아 동부국경획정이 대표적인데, 우선 텐진조약 제9조에서 청-러시아 양국 정부의 전권대리인에 의한 국경조사와 국경획정, 국경설명서 및 지도 제작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었고, 1859년 러시아의 부도고스키 탐사대의 국경조사를 거쳐 1860년 11월 베이징조약이 체결되었다. 베이징조약 제1조에서 헤이룽강(黑龍江)에서 우수리강(烏蘇里江)을 거쳐 두만강에 이르는 청·러 국경을 획정하였고, 제3조에서 양국 정부의 전권대리인에 의한 국경 조사, 국경지도와 국경설명서 작성, 의정서 서명을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경 조사를 위한 청러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국경 측량 및 지도 제작을 거쳐 8개의 국경표시물 설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861년 6월 싱카이호(興凱湖, 러시아명 한카호)에서 양국 전권대리인들이 국경지도 및 국경설명서를 교환하는 한카의정서에 서명하였다.⁷⁾ 이

7) 트가첸코,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 동북아역사재단, 2010, 36-49쪽.

상의 청·러 국경획정 과정을 정리하면 [국경 조사(당사국)-국경회담-국경조약 체결-공동조사단 설치-국경 측량·지도 제작-국경표시물 설치-의정서 서명]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중국과 프랑스 간의 청-베트남 국경획정은 구체적인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지도에 근거해서 국경을 획정하고 난 뒤에 다시 국경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청-베트남 국경획정은 청불전쟁 결과 베트남이 프랑스의 보호국임을 중국이 인정하고 베트남에 대한 중주권을 포기한 위에서 이루어졌다. 1885년 중국과 프랑스가 청불전쟁을 종결짓는 텐진조약에 조인함으로써 국경획정이 시작되었다. 텐진조약 제3조에서 ‘6개월 이내 중국과 통킹(北圻)의 국경획정’을 규정함에 따라 1885년 8월 양국의 감계대표가 임명되어 광서국경, 광동국경, 운남국경에 대한 국경회담과 국경조사에 착수하였다. 광서국경은 1886년 1월부터 양국대표가 국경회담을 개최하였고, 3월부터 공동감계에 들어가서 4월에 경계를 획정한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광동국경도 1886년 11월부터 1887년 2월까지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을 거쳐 3월에 의정서에 서명함에 따라 1887년 6월에 국경조약이 체결되었다. 국경이 획정됨에 따라 광서국경은 1890년 12월부터 양측 입계위원(立界委員)이 지도 제작과 표시물 설치를 시작하여 1894년 6월에 표시물 설치를 완료하고 광서국경에 대한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광동국경은 1893년 12월, 운남국경은 1897년 6월에 표시물 설치를 완료하고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청-베트남 국경획정이 완료되었다.⁸⁾ 이상에서 정리한 청-프랑스 국경획정은 [국경회담-공동감계-의정서 서명-국경조약 체결-입계위원회 설치-지도 제작 및 국경표시물 설치-의정서 서명]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청-러시아, 청-프랑스 국경획정과 비교할 때 조선-청 국경회담도 근대적 국경획정의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청

8) 노영순, 청불전쟁(1884-1885년) 전후 중국-베트남 국경문제와 획정과정, 북방사논총 4, 2005, 147-149쪽; 呂一燃, 『中國近代邊界史』(下), 四川人民出版社, 2007, 827-875쪽.

과 조선에서 국경에 대한 공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양국의 감계위원이 임명되었다.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쳐 양측의 감계위원이 백두산과 두만강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경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경조약 체결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제2차 국경회담 시작 이전에 조선 측이 토문강 경계론을 포기하였기에 중국 측은 곧 국경조약 또는 의정서가 체결되고 양측 감계위원에 의하여 국경표지물 설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선 측이 홍토수 경계론을 고수하는 바람에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국경회담의 근대적 성격과 관련하여 저자는 중국 측에서 국경문제를 “청과 조선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줄곧 ‘길림’과 ‘조선’ 사이의 문제로 처리하려는 자세를 고집하였던 점”(480쪽)에서 전통적인 자소-사대 관계가 국경회담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지만, 1880년대 청·러 동부국경감계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지방당국 차원의 국경문제 교섭이 중앙정부 차원의 국경회담으로 격상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선·청 공동감계가 훈춘당국과 함경도 당국에 의하여 먼저 제기되고 국경회담으로 나아갔듯이 청·러시아 동부국경감계도 훈춘당국에 의하여 제기되고 국경회담으로 진전되었다. 두만강 북쪽의 조선인 월간민을 발견하여 보고한 훈춘지부 이금용(李金鏞)이 뒤이어 흑정자(黑頂子)에 있는 러시아 초소를 발견하고 보고함에 따라 재감계 문제가 시작되었으며, 1883-1884년에 양측 지방 당국 사이에 국경문제 교섭과 공동감계가 이루어졌다.⁹⁾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지방 당국 차원의 교섭은 중앙정부 차원의 국경회담으로 격상되고 흑정자의 반환과 경계비의 조정, 보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훈춘당국과 함경도 당국의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이 중앙정부 차원의 국경회담으로 격상되는 조선·청 국경회담과 유사하다. 미루어

9) 김형중, 「오대징과 1880년대 청·러 동부국경감계」, 『중국근현대사연구』 60, 2013, 22-30쪽.

짐작하자면 중국 측에서는 명시적인 조약은 없었지만 압록강-두만강 국경을 양국 간의 합의된 국경이라고 인식하였고, 길림당국에서는 월간민의 국경 침범 및 함경도 당국의 국경문제 제기를 ‘재감계’ 정도의 문제로 간주하고 함경도 당국과의 국경교섭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청 국경회담에서 사대-자소 관계라는 전통적 틀은 근대적 국경획정과 영역내 주민에 대한 배타적 지배라는 ‘실질’을 포장하는 ‘명분’으로 기능하였다. 청-프랑스, 청-러시아 간의 대등한 국경획정에 비하여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청이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과 개입을 강화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조선-청 국경회담은 저자처럼 “사실상 양국 사이의 대등한 교섭이 아니라 속방의 천조상국에 대한 전통적인 ‘자소’(字小)의 요구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성격이 강”(480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령 월간민 처리를 둘러싸고 중국 측에게 자소의 은혜를 요청하는 조선 측과 속방에 대한 시혜에 의하여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중국 측의 태도에서, 그리고 제2차 국경회담을 끝내면서 이중하가 황제에게 최종 결정을 주청하는 것 등에서 전통적인 자소-사대 관계가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조선-청 국경회담이 근대적 국경획정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듯이 사대-자소 관계라는 전통적 틀도 국민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라는 ‘실질’을 포장하는 ‘명분’으로 기능하였을 뿐이다. 이는 국가간의 대등한 교섭이라고 할 수 있는 청-러시아 국경획정의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러시아에서는 베이징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알렉산드르 2세가 베이징조약을 승인한 반면, 중국에서는 청 황제의 칙령 — 베이징조약안을 전면 승인하며, 자국 전권대리인에게 조약의 서명날인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칙령 — 이 먼저 낭독되고 베이징조약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청 황제의 결정에 따라 베이징조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중화 질서적 관념이 명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⁰⁾ 월간민 처리를 둘러싼 협상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사대-자소 관계에 기대어 ‘차지

안민(借地安民)’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계의 확정을 통한 영토의 확보와 그 영토에 속한 주민에 대한 배타적 지배의 관철이라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이해관계가 협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측은 중국 측 대로 두만강 국경을 확인함으로써 월간민을 청국의 지배에 속하는 주민으로 파악하고 동북지역 개척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조선 측은 조선 측 대로 월간민에 대한 함경도 당국의 ‘식민지 경영’을 통하여 월간민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지방통치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국경획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황제에게 주청한 것과 관련하여 저자는 청 황제가 최종 결정을 회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청 황제가 국경획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교섭 상대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저자는 중국 측의 석울수 경계 결정을 조선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대-자소라는 상호관계에 내재된 고유한 특성, 즉 쌍방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도덕규범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청의 일방적인 강압이나 결정만으로 마무리될 수는 없었다”(481쪽)고 주장하지만, 아래에서 보듯이 제2차 국경회담 이후의 사태 진행은 사대-자소라는 전통적 상호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셋째, 청-러시아, 청-프랑스 국경획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국경회담 이후 황제는 길림장군의 요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고, 길림 당국에서는 양측 감계위원이 국경표지물을 설치하고 의정서에 서명하는 과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제2차 국경회담의 결렬 이후 “광서제는 물론이고 총리아문·북양대신·길림장군 누구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하지 않은 상황이 출현”(396-397쪽)하였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제3차 공동감계를 길림장군이 최종 대안으로 제기한 것은 결국 누구도 책임지고 이 문제해결을 위한 ‘결

10) 트가첸코, 앞의 책, 40-41쪽.

단’을 내리려 하지 않았던 데에서 나온 결과”(397쪽)였다. 즉 조선 측에서 황제에게 최종 결정을 요청하였지만 황제는 물론이고 책임있는 누구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길림장군이 조선 측의 반대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는 재감계를 최종 대안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2차 국경회담 이후의 중국 측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황제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길림장군의 요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고, 길림 당국에서 조선 측에 제3차 공동감계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양측 감계위원이 함께 국경표지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제2차 국경회담의 결렬 이후 길림 당국은 소백산 분수령에서 발원하는 석을수가 두만강의 원류라고 결론짓고 1887년 7월에 이러한 길림 당국의 입장 더불어 소백산에서 석을수를 거쳐 무산까지 10개의 경계비를 세울 것을 총리아문과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보고하였고, 총리아문에서는 “응당 어떻게 조선부사와 함께 계비를 고쳐 세울지, 그리고 앞서 언급된 월간유민을 각기 [조선으로] 쇠환시키거나 아니면 [중국호적에] 편입시켜 안치시킬지 하는 점은 모두 귀 장군이 명확하게 검토한 다음, 조선의 감계관에게 조회하여 함께 조사하고 계비를 세운 다음 독자 안건으로 상주하여 처리”(391쪽, 밑줄 평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제 국경회담과 관련해서는 조선 측 감계위원과 협의하여 소백산-석을수 경계를 따라 경계비를 세우는 일만 남았고, 월간민 처리는 길림장군이 검토한 뒤에 국경회담과는 다른 안건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총리아문과 협의한 사안에 대하여 11월 26일 길림장군은 황제의 결정을 간청하는 상주를 올렸고, 12월 13일에 “해당 아문에 알리도록 하라. 지도도 아울러 발송할 것”¹¹⁾이라는 황제의 주비가 내려졌으며, 다음날 군기처로부터 총리아문에 전달되었다. 즉 황제는 길림 당국의 입장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고 총리아문과 길림 당국에 이러한 결정이 통보

11) 김형중 편역, 『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 관련 자료 선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891쪽.

되었다.

중국 측은 황제의 결정을 조선 측에 통보하고 바로 국경표지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중국 측으로서는 이미 제2차 국경회담을 시작할 때에 홍단수로 경계를 정하고 국경선에 설치할 15개의 석비를 준비하였다가 설치하지 못한 전례가 있기에, 이번에는 석을수로 경계를 정하고 국경선을 따라 10개의 석비를 세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측에서 감계위원이 국경표지물 설치에 나서는 것은 황제가 승인한 석을수 경계를 수용하는 것이 되기에, 1888년 4월 이홍장에게 “지금 길림장군이 주청하여 이미 상유를 받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감히 다시 답장을 못하고 있습니다...(중략)... 응당 다시 귀 대신에게 자문을 보내어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도문강 발원지에 대한 감계 상황을 상세하게 대신 상주해 주셔서 황상께서 가부를 결정하여 공정함을 밝혀 주시도록 해 주기를 요청”¹²⁾하는 자문을 보냈다. 조선 측이 석을수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석을수 경계에 대한 황제의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으며, 중국 측으로서는 조선 측을 설득하여 석을수 경계에 합의하고 국경표지물 설치와 의정서 서명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조선 측이 더 이상 국경조사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국경회담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른 상황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타협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두만강 국경을 확인한 중국으로서는 국경회담에 연연하지 않고 월간민을 자국 국민으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상에서 청-러시아, 청-프랑스 국경획정에 비추어 조선-청 국경회담의 과정과 평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이미 저자가 청-러시아 동부국경감계에 대한 연구성과를 제출하였고 동아시아에서 전근대적 국경획정에서 근대적 국경획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자료와 연구를 축적하

12) 위의 책, 920-921쪽.

고 있기에 굽어 부스럼을 만든 건 아닌지 조심스럽다. 평자로서는 단지 조선-청 국경회담이 동아시아에서 근대적 국경획정으로의 전환이라는 넓은 지평에서 논의되기를 바라거니와, 1880년대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에 대한 저자의 작업이 대한제국기 간도정책이나 러일전쟁 직후 일본의 간도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간도문제 연구가 완결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이러한 작업이 든든한 기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데올로기와 사실(史實)/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불편한’ 진실이 통용될 수 있는 정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